

금융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개정 신용정보법 하에서의 변화

I. 들어가며

II.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전송요구권의

내용과 주요 쟁점

1. 마이데이터 사업으로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내용과 관련 쟁점
2. 전송요구권의 내용 및 관련 쟁점

III.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 스크린 스크레이핑에서의 탈피를 중심으로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의 문제
2. 금융회사 등 이용약관 위반 문제
3. 정보 보안 문제
4. 신용조회업 관련 문제
5. 정보 분석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또는 자문 문제

IV. 마치며



김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보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I. 들어가며

1)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2018. 5. 25. 시행된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20조에 도입된 개인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과 유사한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후술하는 것과 같이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이터보유자와 그에 따라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데이터수신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인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사업으로 세분화되었다.

3)

신용조회업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인 반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본인에게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에 해당하여 신용조회업과는 구분된다(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2018. 7. 13면).

4)

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2018. 7.;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 결과 - 다양한 분야의 11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 2020. 6. 3., 4-5면.

2020. 2. 4.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금융분야의 데이터 수집, 활용 및 공유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여, 데이터보유자가 제3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보주체가 데이터보유자에게 적극적으로 본인 또는 일정한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하였다.¹⁾ 한편, 전통적인 신용조회업(Credit Bureau)²⁾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등 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정보주체에게 통합하여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³⁾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금융거래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 금융상품 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전송요구권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관한 규정은 2021. 2. 4.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일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규정은 2021. 8. 4.부터 시행될 예정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유리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추천을 받을 수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융상품의 비교·공시가 강화되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등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⁴⁾

이하에서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와 전송요구권의 내용과 주요 쟁점, 기존 금융거래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 문제되었던 이슈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서 마이데이터 제도와 전송요구권에 대한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전송요구권의 내용과 주요 쟁점

1. 마이데이터 사업으로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내용과 관련 쟁점

신용정보와 관련된 금융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9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1호). 다만, (i)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만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조회·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ii)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정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처리하거나(즉, 임직원 개인정보만 처리하는 경우) 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제외된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를 정부의 주도 하에 출시하여 제공하여 왔는데,⁵⁾ 앞서 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각 은행 계좌 내역과 거래내역 등을 통합하여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향후 오픈뱅킹이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제도화 되는 경우⁶⁾ 위에서 본 (ii)에 해당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제도화되기 전에는 규정 문언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해석상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아직까지 오픈뱅킹이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제도화되기 전이라 위 (ii) 항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i) 항목에 해당하여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그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고객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및 조회 권한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i) 항목에 따라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오픈뱅킹 서비스 참가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금융위원회는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 참가자가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해서 조회·열람해 주는 서비스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⁷⁾ 이에 따라 오픈뱅킹을 통해 제공하는 은행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는 허가 없이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은행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기관이 기존에 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모든 핀테크 사업자와 다른 은행까지 확대하고, 기존보다 이용수수료를 낮추어 제공하고 있다. 2019. 10. 30. 시범 실시하여 2019. 12. 18. 전면 시행하였다.

6)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2020. 7., 19면.

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 신청 관련 Q&A, 2020. 7., 1면.

8)

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2018. 7., 10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9의2호, 제4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데이터 기반 핀테크 생태계 조성,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와 자문·추천 간의 이해상충, 대형사 정보 독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재량을 가지는 허가제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⁸⁾ 이에 따라 기존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법 시행일인 2020. 8. 5.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용정보법 부칙 제7조).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약 116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수요조사에 응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약 40여개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⁹⁾

9)

금융위원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 안내, 2020. 8. 19., 1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 본인정보 관리·사용 계좌 제공 서비스, 정보주체 권리 대리행사 서비스, 금융상품 광고·홍보 및 컨설팅,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고(신용정보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일임업, 전자금융업, 금융상품자문업, 신용정보업,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등을 겸영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신용정보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겸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또는 비금융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금융관계법률에서 허용된 고유·겸영·부대업무나 비금융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겸영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전자상거래업은 겸영업무로서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인허가 근거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었던 고유·겸영·부대업무는 겸영업무로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경우 데이터보유자가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접근매체나 본인확인수단(본인신분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접근수단”)을 (i) 직접 보관하는 방법, (ii)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iii)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등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임·대리·대행 등의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이는 기존에 고객의 인증정보를 직접 저장하

는 등의 방식으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등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 방식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에 대해서는 III.항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데이터보유자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한 정보전송은 API 방식으로만 제한하였으므로, 결국 데이터보유자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간의 정보 전송은 API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데이터보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6항).

그 밖에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2항), 전송내역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였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0항). 금융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고객에게 자신 또는 계열사가 제조·판매하는 금융상품을 자문·추천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2. 전송요구권의 내용¹⁰⁾ 및 관련 쟁점

(1) 전송요구권의 개요

전송요구권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데이터보유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데이터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4항), 이를 통해 소비패턴 분석 등 시계열 분석이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해 질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즉, 데이터보유자)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자(즉, 데이터수신자)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수집된 정보를 다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전송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통합조회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및 컨설

10)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4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전송요구권에 관하여 (i)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ii)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iii)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iv) 전송요구권 행사 방식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v)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 (vi)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 (vii)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지원 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협의회 및 기관에서 전송요구권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팅 서비스, 본인정보 관리·사용 계좌 제공 서비스 등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용이하게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간의 정보 전송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타 회사의 금융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2) 전송요구권 행사대상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i) 데이터보유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데이터보유자에게 제공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와 데이터보유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ii)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되는 신용정보여야 하며, (iii)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예컨대, 개인신용평점이나 등급 정보)는 제외된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2항).¹¹⁾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는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납부정보, 보험료 납부 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 포함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6항, 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 2,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2항, 제23항 및 <별표1>). 그런데, 규정 문언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에 맡기고 있다. 또한,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정보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보면 그 범위가 불명확한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로 열거된 결제 관련 정보에는 주문내역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전자상거래업과 전자금융업을 겸업하거나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관련 주문내역정보를 제공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전송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¹²⁾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배경은 금융권과 핀테크·IT기업(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유한 핀테크·IT기업) 간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¹³⁾ 즉, 금융권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전송요구권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핀테크·IT기업들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음), 핀테크·IT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문내역정보 등 정보를 받아올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유한 핀테크·IT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문내역정보는 금융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문내역정보와 같이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전송요

11)

GDPR 제20조 제4항은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hall not adversely aff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2017. 4. 5.))에서는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위와 같은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12면), 신용정보법에서 별도 생성하거나 가공한 정보를 전송요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도 동일한 취지로 이해된다.

12)

중앙일보, 2020. 8. 31., “짜장면 1그릇 주문은 신용정보일까?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논쟁

13)

디지털투데이, 2020. 7. 9., 금융권 “핀테크, IT 기업에만 도움, 금융회사 역차별” 핀테크, IT기업 “기존 금융사 혁신 부족, 기득권 지키려고 견제”; IT조선, 2020. 9. 2., “신발 구매 내역이 신용정보?” 정보의 애매한 기준에 산업계반발

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과연 적절한지 여부이다. 예컨대 주문내역정보에는 종교, 정치, 사상, 건강, 성생활에 관한 지출내역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전송될 수 있다. 민감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행사라 하더라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서의 유출사고가 일어나거나 제3자에게 전전유동되어 남용되는 경우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주문내역정보를 일괄적으로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문내역정보 중에서는 (i) 데이터보유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ii) 신용정보주체가 데이터보유자에게 제공한 정보, (iii) 신용정보주체와 데이터보유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에치업 등)을 영위하면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 또는 생성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송요구권 행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하게 전자상거래업 등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서 수집 또는 생성한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즉, 전송요구권 행사 상대방에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금융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을 겸업하는 기업과 전자금융업을 겸업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전자는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비금융데이터까지 전송할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후자는 비금융데이터는 전송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보유자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령한 개인신용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상거래업체에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문내역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애초에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전자상거래업체가 생성 및 보유한 정보까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제공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데이터보유자는 가능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고 데이터수신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권리이므로, 전송요구권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 및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행사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송요구권 행사

14)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2015 NAVER Privacy White Paper, 120면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에 정보보호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보주체가 데이터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리의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제도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동의를 하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¹⁴⁾ 전송요구권의 경우에도 데이터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특히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범주화된 경우에는) 과연 전송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정보의 구체적인 성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정보주체가 자신이 행사하는 정보전송권의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특히 정보주체가 데이터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정보전송권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이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정보주체가 충분히 정보전송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해당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그 내용에 따른 정보전송권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문내역정보에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고객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전송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전송요구권의 대상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상 일반 상거래 및 기업을 전송요구 행사 상대방에서 제외한 이상 그 취지에 비추어 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하게 전자상거래업 등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서 수집 또는 생성한 정보나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령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경우에는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이에 대해서는 정보의 흐름 측면에서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해당 업체가 어떠한 영업과 관련하여 수집 또는 생성한 것인지, 혹은 위탁 받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을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특정 정보가 고객 본인으로부터 수집되거나 사업자가 직접 생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자신의 업무를 위해 제공 받은 것인지 타인의 업무를 위해 제공 받은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정보전송을 거부하는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 필요 이상으로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정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범위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전송요구권의 행사와 데이터의 전송

1)전송 의무 및 동의 문제

전송요구를 받은 데이터보유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3항). 이 경우 데이터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¹⁵⁾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¹⁶⁾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3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7항 및 제9항). 즉,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정보 제공이므로,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상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법은 신용정보법상 예외 인정 대상 규정만 열거하고 있어 열거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등은 예외 인정 대상 규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러나, 전송요구권의 경우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이상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인 권리행사 방법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송요구권에 내재된 성격으로 볼 수 있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규정들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이 전송요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한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예외 인정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개정법과 같이 예외 규정을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법령에서 제3자 제공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예외가 인정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전송 요구 방법과 확인 의무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데이터보유자에 대해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¹⁷⁾을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8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 또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때 신용정보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¹⁸⁾으로 하도록 하였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3항).

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관세법」 제116조, 「어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전자정부법」 제42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외국환거래법」 제21조를 열거하고 있다.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열거하고 있다.

17)

구체적으로 전송요구를 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전송요구의 종료 시점,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18)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i)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 (ii)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iii) 전화를 포함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식(단, 동의 내용 이메일 등 사후 고지 필요), (iv)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19)

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2018. 7. 17 면

20)

금융보안원에서는 사원기관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규범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보유자가 확인 방식을 채택할 때 일종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전송요구권 행사 방법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송요구에 관하여 데이터보유자가 확인하는 등의 의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즉, 데이터보유자는 개인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확인을 지연하거나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 등에 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1항 제1항).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 데이터의 제공에 앞서 해당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의 명시적 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데이터보유자에게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¹⁹⁾ 현행 신용정보법 규정상으로는 데이터보유자에게 이와 같은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인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데이터보유자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고객 데이터가 잘못 전송된 경우, 이론적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또는 유출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나타난 금융당국의 입장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데이터보유자가 해당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 의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²⁰⁾

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데이터보유자로 하여금 정보 전송 전 전송요구권 행사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고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법 규정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데이터보유자에게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데이터보유자의 확인 의무를 강조하게 되는 경우 고객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결국 각 데이터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전송요구권 제도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고객 확인 의무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데이터보유자 입장에서 데이터수신자가 확인한 결과값을 근거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수신자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데이터보유자는 데이터수신자가 확인한 결과값을 신뢰하여 별도로 고객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제도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데이터의 전송 방법

데이터보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 전송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방식’에 의해 ‘직접’ 전송하는 형태(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²¹⁾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로 이루어져야 한다(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7항).²²⁾ 다만, 예외적으로 (i) 자산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ii)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iii) 신용정보회사, (iv)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3자인 중계기관(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행정안전부, 주식회사 코스콤 등)을 통한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즉, 데이터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전송할 때에는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송해야 하지만, 규모나 거래빈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데이터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하여 API 시스템 및 인력 등을 자체 구비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²³⁾

반면, 데이터보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아닌 자에 대해 전송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전송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메일 첨부파일 형식(pdf, xml 등)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는 것도 허용되고, 반드시 API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또한, 만약 중계기관에서 데이터보유자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아닌 자에 대한 전송에 대해서도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보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아닌 자에 대해 전송함에 있어서 (데이터보유자의 규모나 거래 빈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스크린 스크레이핑에서의 탈피를 중심으로

기존에 금융거래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스크린 스크레이핑은 고객의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스크린에 보여지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전에도 이러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존재하였다. 기존에는 이러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을 특별히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제는 없었으나, 그동안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법규, 보안 등 측면에서 이슈가 제기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기존에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에서 발생하였던 이슈들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1)

(i)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ii)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 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iii)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iv)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7항), 이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으로, 네트워크상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기능 및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금융위원회, [알기쉬운 핀테크] 금융권 Open API, 2019. 2. 21., 2면).

22)

이 규정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1. 8. 4.부터 시행된다.

23)

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2018. 7. 16면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의 문제

스크레이핑 방식은 크게 서버 스크레이핑 방식과 클라이언트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구분된다. 서버 스크레이핑 방식은 이용자 인증정보를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에 전달 및 저장하여 그 회사의 서버에서 이용자 인증 및 스크레이핑을 처리하는 방식이며, 클라이언트 스크레이핑 방식은 이용자의 단말기에 있는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단말기에서 이용자 인증 및 스크레이핑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서버 스크레이핑 방식의 경우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에 인증정보가 저장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서 제3자인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가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인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한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고객이 접속한 것과 동일하게 인식이 되어 서비스 제공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적법한 대리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 제공 회사가 자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어서 단순히 고객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정보를 수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제3자인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한 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도 유사한 취지에서 금융회사의 Open API를 활용한 핀테크 업체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오픈플랫폼 API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은 핀테크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일 뿐’이고, ‘은행이 핀테크 업체가 관리하는 핀테크 솔루션에 탑재된 통신API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을 요청 받아 회신할 경우’, ‘핀테크 솔루션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를 전달하는 단순 통로 역할만 수행한다 하더라도, 명의인 거래정보의 철저한 보호라는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다수의 핀테크 업체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여 고객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²⁴⁾

24)

금융위원회 2015. 12. 24.자, 2016. 1. 15.자, 2016. 3. 9.자 법령해석 회신사례 참조

25)

금융위원회 2016. 8. 31.자 법령해석 회신사례에서는 ‘정보주체인 고객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비서 정보수집 엔진이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을 통해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의인인 고객의 동의 하에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시스템이 동 정보를 이용하여 타행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수집하는 행위는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해석하였다. 비록 동 해석이 서버 스크레이핑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스크레이핑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클라이언트 방식과 같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이를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전달하는 것은 제3자 제공 동의가 이슈가 될 가능성은 보다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클라이언트 스크레이핑 방식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서비스 제공 회사에 직접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단말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제공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서버 스크레이핑 방식에 비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 이슈가 문제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지만, 고객 단말기는 여전히 단순히 도관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수집 주체는 서비스 제공 회사이므로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²⁵⁾

개정법은 데이터보유자인 금융회사 등이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데이터수신자에게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는바, 금융회사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전송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의 결과로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하였다.²⁶⁾

2. 금융회사 등 이용약관 위반 문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금융회사 등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그러한 방식의 수집을 금지하는 이용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원의 '내 보험 다 보여' 이용약관은 '신용정보원의 사전승낙 없이 기술적 수단(스크레이핑, 캡처, 크롤러, 미러링 등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및 기타 자동화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콘텐츠를 가져가거나 제3자가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제13조 제1항 제7호). 고객이 이러한 이용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7조 제8호).

위와 같은 이용약관상 의무위반의 직접적인 책임 귀속주체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 회사에 다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 회사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시스템 부하 처리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회사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관련 비용 분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종래 이와 같이 이용약관상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을 금지하는 경우 당사자간 법률 관계 및 그 효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데이터보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 전송할 때에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API 방식을 이용하여서만 전송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이용약관 위반과 관련된 이슈는 향후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혹여 데이터보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닌 자에 대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개정법상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데이터보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 전송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스크린 스크레이핑이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이 경우를 현실적으로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로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데이터수신자가 고객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가져오는 것인데, 데이터보유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전송행위가 있다거나 데이터수신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 본인확인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보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 전송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방식'(API 방식)에 의해 '직접' 전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보 보안 문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이용자 인증정보를 회사 서버 또는 이용자 단말기 모바일 앱 내 저장·관리하여 금융회사 등 시스템에 접속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해킹 시 인증정보 등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회사가 필요 이상의 이용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존재하고, 금융회사와 협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보안대책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각 금융회사에서 추출된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²⁷⁾

반면, API 방식은 금융회사와 서비스 제공 회사 간에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금융회사와 서비스 제공 회사 간에는 이용자 인증정보가 아닌 허용권한증표(access token 값)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므로 이용자 인증정보를 회사 서버 또는 이용자 단말기 모바일 앱에 저장·관리할 필요가 없고(이용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로그인 함),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 및 기술 적용이 가능하며, 표준화가 가능함에 따라 신생 핀테크업체 시장 진입이 가능해 진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정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한 정보 전송은 원칙적으로 API 방식으로만 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에 따른 보안 이슈는 향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신용조회업 관련 문제

개정 전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무’는 (i)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ii)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iii)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었다(개정 전 신용정보법 제2조 제8호). 위 규정에서 ‘의뢰인’에 정보주체 본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금융거래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신용조회업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된다. 다만, 개정 전에도 법 제2조 제9호에서 신용조사업을 정의하면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신용정보법상 ‘의뢰인’은 ‘타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융위원회도 ‘통신회사가 보유한 통신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통신등급을 산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조회업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신용조회업으로 판단한 점(2017. 3. 9.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사례)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조회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금융거래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신용조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

실성이 존재하였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이를 명확히 하여,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용조회업에 해당하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별도의 라이선스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이러한 이슈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5. 정보 분석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또는 자문 문제

기존에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자문하는 것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허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광고 행위의 형태로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소개하였다. 특히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 업체의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업 겸업이 금지되어 대출중개 업무를 위한 라이선스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광고 형태로만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신용정보법상으로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겸영업무로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금융상품 중개 또는 자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와 전자금융업을 겸업하는 것도 허용하였으며,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 겸영, 부대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겸영업무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금융상품 중개 또는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11조 제6항 제2호, 시행령 제11조 제6항).

IV. 마치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비록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데이터의 수집, 이용 및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데이터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송요구권 행사를 본인이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인증 방법을 구비하여야 하고, API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전송요구권에 따른 데이터보유자의 의무와 책임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송요구에 따른 전송 시 다른 법률에

다른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열거되지 않은 법령상 동의 또는 통지 의무도 면제되는 것인지가 규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데이터보유자에 있는지도 규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하게 법령을 개정하거나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데이터보유자와 데이터수신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정보주체의 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양자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